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99 발의연월일: 2024. 10. 2.

발 의 자: 송석준 · 김선교 · 이종욱

유상범 · 김예지 · 조배숙

김성원 · 장동혁 · 박준태

주진우 • 곽규택 • 이종배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등 다수의 공중이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인명을 공격하는 이상동기 범죄사건 발생과 함께 온라인 등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살인예고 글 등이 다수 게시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는 일반적 규정이 없어 처벌의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형법」에 신설함으로써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

호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및 제116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 및 제1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16조의3(공공장소흉기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
	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
	로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u>하의 벌금에 처한다.</u>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
	<u>다.</u>
<u><신 설></u>	제116조의3(공공장소흉기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
	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
	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
	를 소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u>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u>
	금에 처한다.